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39
----------	---------

제출년월일 : 2013.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9.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7. 9)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2012. 9.28)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함. (안 제6조)
- 나. 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다. 법 제26조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회의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라.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정하고 주민협회의의 구성·운영은 안 제8조를 적용함. (안 제9조)
- 마.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 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함. (안 제11조)

3. 개정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3. 3. 21. ~ 2013. 4. 10.(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3. 5. 14)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블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을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판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간판표시계획서는 광고물등의 설치위치, 수량, 종류, 규격을 표시한 배치 계획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자율관리구역의 구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주민협의회회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등 변동사항

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은 제8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영 제3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 다른 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한 곳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을 표시한자가 제거된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으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

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에 따라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
 -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 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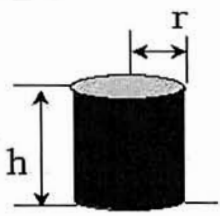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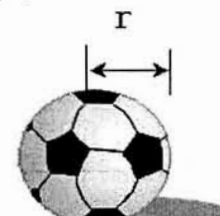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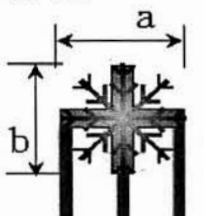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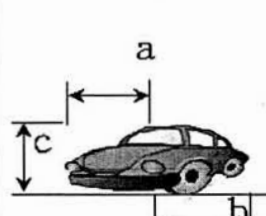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 위	기 준	수수료 금액
1. 가로형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원 1,500원
나. 시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 으로 한정한다)	개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원 2,000원
2. 세로형간판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원 1,500원
3. 돌출간판	개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원 1,000원 5,000원
4. 공연간판	개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원 5,000원
6. 지주이용간판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원 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수료 금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원 1,000원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원 15,000원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원 10,000원 2,000원
11. 선전탑	개		5,000원
12. 아취광고물	개		5,000원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원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원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원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 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원통)	(구)	(1면)	(입체모형)
			
$S=2\pi rh$	$S=4\pi r^2$	$S=(ab) \times 70\%$	$S=(2ac+2bc) \times 70\%$
※참고 : S=면적의 합, $\pi=3.14$, r=반지름, h=높이			

-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구 분	계 산 식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내부조명	$A \times \{1 + (B/C \times 0.5)\}$
C : 총 면적	외부조명	$A \times (1 + B/C)$

-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1 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 (5)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 (6)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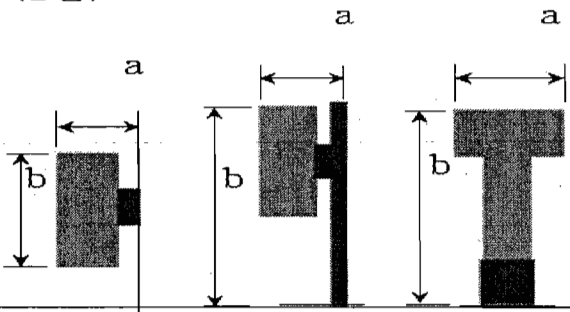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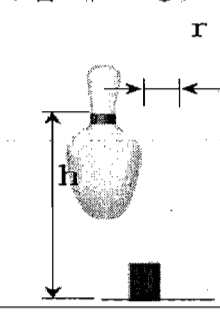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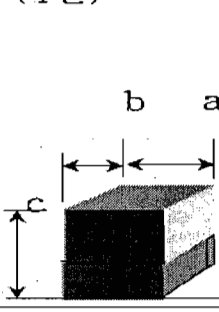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 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 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 제15조제4호),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 드벌룬(영 제23조제2항)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원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 미터이하	45,000원
	m ²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3,000원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 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원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 미터이하	22,000원
	m ²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 미터당 가산	3,000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 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 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영 제 23조제3항)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원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 미터이하	22,000원
	m ²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산	1,500원
4. 현수막게시시설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원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 미터이하	45,000원
	m ²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시 1제 곱미터당 가산	2,000원
5. 기타 광고물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2면)	(입체모형)	(4면)
 $S = (2ab) \times 70\%$	 $S = (2\pi rh + \pi r^2) \times 70\%$	 $S = (2ac) + (2bc)$

- (2) 그 외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2)~(6)를 준용한다.
- (3) 구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안전도검사 재신청시에 안전 점검 수수료는 2분의1을 경감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원
변 경	업 소 당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9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1) 2.0㎡ 이하	20만원
2)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3)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4)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2)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3)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4)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5)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1)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2)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3)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4)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5)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라.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1) 2.0㎡ 이하	20만원
2)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3)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4)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2)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3) 7.1m' 이상 8.0m' 이하	79만원
4) 8.1m' 이상 9.0m' 이하	89만원
5) 9.1m' 이상 10.0m'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10m' 이상 20m' 미만	
1) 10.0m' 이상 12.0m' 이하	119만원
2) 12.1m' 이상 14.0m' 이하	139만원
3) 14.1m' 이상 16.0m' 이하	159만원
4) 16.1m' 이상 18.0m' 이하	179만원
5) 18.1m' 이상 20.0m'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20m'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에드벌룬	
가. 연면적 3m' 미만	
1) 0.5m' 이하	30만원
2) 0.6m' 이상 1.0m' 이하	35만원
3) 1.1m' 이상 2.0m' 이하	40만원
4) 2.1m' 이상 3.0m'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3m' 이상 5m' 미만	
1) 3.0m' 이상 3.5m' 이하	59만원
2) 3.6m' 이상 4.0m' 이하	69만원
3) 4.1m' 이상 4.5m' 이하	85만원
4) 4.6m' 이상 5.0m' 미만	99만원
다. 연면적 5m' 이상 10m' 미만	
1) 5.0m' 이상 6.0m' 이하	119만원
2) 6.1m' 이상 7.0m' 이하	139만원
3) 7.1m' 이상 8.0m' 이하	159만원
4) 8.1m' 이상 9.0m' 이하	179만원
5) 9.1m' 이상 10.0m' 미만	199만원
라. 연면적 10m'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m'를 초과하는 면적의 1m'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
 별론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 | |
|--------------------|------|
| 1) 2.0㎡ 이하 | 30만원 |
| 2) 2.1㎡ 이상 3.0㎡ 이하 | 35만원 |
| 3) 3.1㎡ 이상 4.0㎡ 이하 | 40만원 |
| 4) 4.1㎡ 이상 5.0㎡ 미만 | 49만원 |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
| 1) 5.0㎡ 이상 6.0㎡ 이하 | 59만원 |
| 2) 6.1㎡ 이상 7.0㎡ 이하 | 69만원 |
| 3) 7.1㎡ 이상 8.0㎡ 이하 | 79만원 |
| 4) 8.1㎡ 이상 9.0㎡ 이하 | 89만원 |
| 5) 9.1㎡ 이상 10.0㎡ 미만 | 99만원 |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 | |
|----------------------|-------|
| 1) 10.1㎡ 이상 12.0㎡ 이하 | 119만원 |
| 2) 12.1㎡ 이상 14.0㎡ 이하 | 139만원 |
| 3) 14.1㎡ 이상 16.0㎡ 이하 | 159만원 |
| 4) 16.1㎡ 이상 18.0㎡ 이하 | 179만원 |
| 5) 18.1㎡ 이상 20.0㎡ 미만 | 199만원 |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 | |
|----------------------|-------|
| 1) 20.0㎡ 이상 25.0㎡ 이하 | 219만원 |
| 2) 25.1㎡ 이상 30.0㎡ 이하 | 239만원 |
| 3) 30.1㎡ 이상 35.0㎡ 이하 | 249만원 |
| 4) 35.1㎡ 이상 40.0㎡ 이하 | 269만원 |
| 5) 40.1㎡ 이상 45.0㎡ 이하 | 289만원 |
| 6) 45.1㎡ 이상 50.0㎡ 미만 | 299만원 |

마.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별론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 | |
|---------------------|------|
| 1) 연면적 5㎡ 이하 | 40만원 |
|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50만원 |

-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4)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5)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70만원

8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1) 애드벌룬(공) 1개
- 2) 애드벌룬(공) 2개
- 3)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1) 연면적 5㎡ 이하
- 2)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3)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4)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5) 연면적 21㎡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연면적 10㎡ 이하	200만원
2) 연면적 11㎡ 이상	2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9.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1) 1.0㎡ 이하	10만원
2)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3)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1) 3.0㎡ 이상 4.0㎡ 이하	39만원
2)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10.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4만원 - 0.6㎡ 이상 0.8㎡ 이하 24만원 - 0.9㎡ 이상 1.0㎡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4만원 - 1.4㎡ 이상 1.6㎡ 이하 54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8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1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0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9만원 - 1.4㎡ 이상 1.6㎡ 이하 39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10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24만원

28만원

34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59만원

69만원

79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20조제1항
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 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압인 또는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마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3.5×4.5)
마 포 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증명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마포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